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의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에 따른 제출자료, 표준품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제5조의2제3항을”을 “제5조의2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족관계증명서

제52조제2항제1호 중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1조제1
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1조제8호”를 “영 제21조제2
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를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

까지”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 중 “연장신청서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첨부하여”를 “연
장신청서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인증
연장신청서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
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은 해당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
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자목7) 중 “곳(영업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에”를 “곳에”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나목1)가) 중 “잠금장치
를”을 “잠금장치, 침대 및 욕실을”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후단
중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을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를
“빙초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저목 중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을 “휴게음식점영업자,”로,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차. 당일 제조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 당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당일 판매를 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7호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과점영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일반음식점영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또는 구입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7호노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지역 중”을 “다만,”으로,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8호하목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이를 거

것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급식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또는 구입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3 II 제1호제11호나목1) 위반사항란 1) 중 “제2호가목 또는 아목”을 “제2호가목, 아목 또는 차목”으로 하고, 같은 II 제3호제8호라목2) 위반사항란 2) 중 “특수조명시설”을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로 하며, 같은 호 제10호가목4) 위반사항란 4) 중 “어목”을 “어목, 저목”으로 하고, 제10호나목 6)을 7)로 하며, 같은 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17 제8호하목 또는 거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별표 24 제3호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이를 거것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배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제품, 제조일자, 판매량 또는 구입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태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7에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다목2)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다목2) 제6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신청사항	영업장면적 식품용수의 종류	m ² 전화번호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뒤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를 표시는 식공정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식단단 식서관리식품과 즉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함께 식사 대응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별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하거나 구성품목을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지정등급	지정일(지정번호)		
	유효기간 연장사유			
	최초 영업 신고증 발급일			
영업장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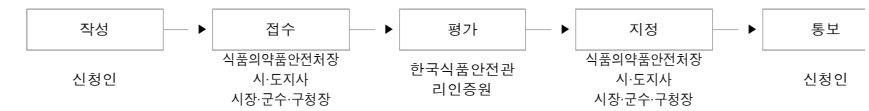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인증: 40일 연장: 60일
영업신고(등록) 번호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신청인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HACCP팀장		생년월일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신청 내용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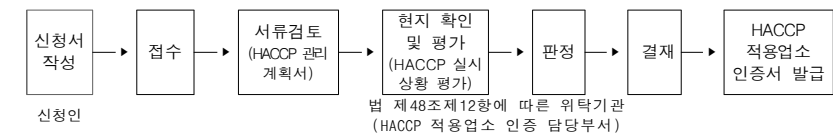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정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 ----- ----- ----- ----- -----.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나. (생략) <신설>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3. (생략) ② ~ ④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② (생략) <신설>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에 따른 제출자료, 표준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 -----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 까지 -----.
② (생 략)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 ----- ----- -- 연장신청서를 ----- ----- -----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인증연장신청서에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③ (생 략)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신 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은 해당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 략)	